■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2서식] <개정 2019. 12. 20.>

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		이 요약서는「화학물질관리법」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하여야함을 구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매업 상호(명칭)		하크코리아 유한회사
판매업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5, 2층 (삼성동, 아이파크타워 2)
판매업 대표전화		02-3484-5700
유해화학물질 정보	물질명	Diboron trioxide
	고유번호 또는 식별번호 (CAS No.)	1303-86-2
	용도	수질 분석용 시약
취급 기준 준수	취급시설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거리 내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샤워 시설 또는 세안시설을 갖출 것 - 폭발 위험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사용되는 장비는 반드시 접지할 것. - 물질의 성상(고체,액체,기체)에 따라 취급할 때 분진, 흄, 가스, 미스트, 증기, 스프레이의 취급자 노출을 막기 위해 국소배기 장치 시설을 갖출것 - 노출기준 이상에서는 호흡보호구를 착용할 것.
	화학사고 예방	- 가연성 물질, 환원제와 반응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 20°C에서 증발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나 분산 시 대기 중 유해 농도가 빠르게 증가하므로 주의할 것 - 습한 공기 존재 시 금속을 부식시키므로 주의할 것 -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보관・저장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할 것 - 단단히 밀폐하여 보관할 것 -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할 것 - 식료품, 음료, 사료 등과 함께 보관하지 말 것
	운반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적재·입출고 중에는 내용물이 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할 것 - 유해화학물질 운전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이어야 함.
	기타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할 것 - 화학사고 발생 시 소방서 및 화학 물질안전원, 합동재난방재센터 등 화학사고대응기관에 연락할 것 - 취급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